

# 기장 이진캐스빌 포레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1-724-360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부산광역시 거주자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4.24(금)	2026.4.29(수)	2026.4.30(목)	2026.5.4(월)	2026.5.11(월)	2026.5.12(화)~ 2026.5.17(일)	2026.5.22(금)~ 2026.5.27(수)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속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기장이진캐스빌포레.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4.24(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4.29(수)	2026.04.30(목)	2026.5.4(월)	2026.5.11(월)	2026.5.12(화)~ 2026.5.17(일)	2026.5.22(금)~ 2026.5.27(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장 이진캐스빌 포레 견본주택</b>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송4로 16, 2층)</li> </ul>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5.11.)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본 주택은 2018.01.26.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총 73세대 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1세대를 아래와 같이 선별(당첨자발표일)하고, 공급금액(bal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금액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중 당첨 세대(정당계약)에 한하여 공급되며, 이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 선착순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이맘부산플랜의 분양가 인하 혜택은 해당 세대의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시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주택형:약식표기)		59㎡	70㎡	합계
아이맘부산플랜 적용세대수	다자녀가구	6	7	13
	신혼부부	15	16	31
	합 계	21	23	44

- 본 주택의 아이맘부산플랜이 적용되는 세대는 위의 표와 같으며, 각 주택형별 배정된 세대수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아이맘부산플랜 대상 세대에서 제외됩니다.
- 경쟁 발생의 경우 : 주택형별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보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수가 많은 경우
- 타입별 상기 경쟁 발생 시 추첨대상자
  - ①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보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수가 많은 경우(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경쟁 시)로서 타 유형 접수 미달에 따라 무작위로 당첨된 자
  -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수가 많은 경우(신혼부부)로서 타 유형 접수 미달에 따라 무작위로 당첨된 자
- 경쟁 발생 시 추첨 일정 안내
  - ① 추첨일 :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검증 기간 중 추첨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 일정을 개별 통보 후,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하여 선별합니다. 단, 추첨 일정은 유선 및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추첨대상자의 착신 불가(수신인의 통화 거절, 스팸 문자 등록, 연락처 변경 등) 및 참석 불가 사유(해외 여행, 병의원 입원 등 일신상의 불참 사유 포함) 등으로 인하여 미참석 시 대상자 선정이 불가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구비서류 : 본인(당첨자) 참석 -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대리인 참석 시 준비물 - 위임인 :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 수임인 : 신분증
- 아이맘부산플랜에 선별되는 세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되는 동·호수 추첨과는 무관합니다.
- 2025.10.31. 개정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과 - 24212호 (2026. 4. 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대라리 541-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4~20층 2개동 총 138세대  
[특별공급 73세대(기관추천 13세대, 다자녀가구 13세대, 신혼부부 31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146	01	059.9174	59	59.9174	23.0724	82.9898	37.5648	120.5546	35.6561	64	6	6	15	2	6	35	29	4
	02	070.7905	70	70.7905	27.0761	97.8666	44.3816	142.2482	42.1266	74	7	7	16	2	6	38	36	4
합 계										138	13	13	31	4	12	73	65	8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형별면적(m<sup>2</sup>) x 0.3025)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그 이하 부분의 단수정리로 인한 전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의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구 분(약식표기)		59m <sup>2</sup>	70m <sup>2</sup>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2	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2
	장애인	1	2	3
	중소기업 근로자	1	1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	7	13
신혼부부 특별공급		15	16	3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2	4
생애최초 특별공급		6	6	12
<b>합 계</b>		<b>35</b>	<b>38</b>	<b>73</b>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금액-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일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6.09.30	2026.12.31	2027.03.31	2027.06.30	2027.09.30	2027.12.31			
059.9174	59	101동 1호 101동 4호 102동 1호	1층	1	91,150,000	273,450,000	364,600,000	10,000,000	8,23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36,460,000	127,610,000	
			2층	3	92,125,000	276,375,000	368,500,000	10,000,000	8,425,000	36,850,000	36,850,000	36,850,000	36,850,000	36,850,000	36,850,000	36,850,000	36,850,000	128,975,000
			3~4층	6	93,100,000	279,300,000	372,400,000	10,000,000	8,620,000	37,240,000	37,240,000	37,240,000	37,240,000	37,240,000	37,240,000	37,240,000	37,240,000	130,340,000
			5~9층	15	94,100,000	282,300,000	376,400,000	10,000,000	8,82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131,740,000
			10~14층	15	96,050,000	288,150,000	384,200,000	10,000,000	9,21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38,420,000	134,470,000
		15층이상	11	98,000,000	294,000,000	392,000,000	10,000,000	9,6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137,200,000	
		102동 4호	2층	1	90,225,000	270,675,000	360,900,000	10,000,000	8,045,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126,315,000
			3~4층	2	91,200,000	273,600,000	364,800,000	10,000,000	8,240,000	36,480,000	36,480,000	36,480,000	36,480,000	36,480,000	36,480,000	36,480,000	36,480,000	127,680,000
			5~9층	5	92,150,000	276,450,000	368,600,000	10,000,000	8,430,000	36,860,000	36,860,000	36,860,000	36,860,000	36,860,000	36,860,000	36,860,000	36,860,000	129,010,000
			10~14층	5	94,075,000	282,225,000	376,300,000	10,000,000	8,815,000	37,630,000	37,630,000	37,630,000	37,630,000	37,630,000	37,630,000	37,630,000	37,630,000	131,705,000
070.7905	70	101동 2호 101동 3호 102동 2호 102동 3호	1층	4	110,825,000	332,475,000	443,300,000	10,000,000	12,165,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155,155,000	
			2층	4	112,000,000	336,000,000	448,000,000	10,000,000	12,4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56,800,000
			3~4층	8	113,200,000	339,600,000	452,800,000	10,000,000	12,640,000	45,280,000	45,280,000	45,280,000	45,280,000	45,280,000	45,280,000	45,280,000	45,280,000	158,480,000
			5~9층	20	114,375,000	343,125,000	457,500,000	10,000,000	12,875,000	45,750,000	45,750,000	45,750,000	45,750,000	45,750,000	45,750,000	45,750,000	45,750,000	160,125,000
			10~14층	20	116,775,000	350,325,000	467,100,000	10,000,000	13,355,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163,485,000
			15층이상	18	119,150,000	357,450,000	476,600,000	10,000,000	13,830,000	47,660,000	47,660,000	47,660,000	47,660,000	47,660,000	47,660,000	47,660,000	47,660,000	166,810,000

■ 공통 유의 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주택형별, 동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 및 제세공과금은 미포함된 공급가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주택 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 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수 있음.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 사업장의 중도금, 잔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행사항(공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수분양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상기 내용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 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p><b>'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b></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b>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b>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 기존주택 처분 조건 :</b>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b>부동산가액 산정</b>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b>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b></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data-bbox="313 1238 2067 1406">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li> <li>■ 장애인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li> <li>■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li> </ul> </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li> <li>■ ②배점</li> </ul>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b>해당시·도(부산광역시)</b>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b>*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b>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b>비고</b>	<p>-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합니다. 단,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p> <p>-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 등으로 확인합니다.</p> <p>-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li> <li>■ ①소득구분</li> </ul> <table border="1" data-bbox="309 536 2130 1010">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2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10%)</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2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순위</li> </ul> <table border="1" data-bbox="309 1190 2130 1337"> <thead> <tr> <th>순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li> </ul>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기준</li> <li>-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li> </ul>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4.2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p>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p> <p>※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p> <p>■ <b>자산기준</b></p> <p>- <b>부동산가액 산출기준</b>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p> <p>- <b>자산보유기준</b></p>														
<b>구분</b>	<b>금액</b>	<b>내용</b>												
<b>부동산 (건물+토지)</b>	<b>3억3,100만원 이하</b>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종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독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주택 외</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p>*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b>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b></p> <p>-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p> <p>■ <b>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b></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당첨자 선정방법	<p>■ <b>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p> <p>■ <b>①지역</b>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p> <p>■ <b>②가점</b>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p> <p>- <b>가점 산정기준 표</b>(「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p>						
	<b>가점항목</b>	<b>가점상한</b>	<b>가점구분</b>		<b>점수</b>	<b>가점구분</b>	<b>점수</b>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p>※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p> <p>■ <b>③청약통장 가입기간</b>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p>-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b>비고</b>	<p>■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p> <p>-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p> <p>■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li> <li>※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li>■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li> <li>-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li> <li>*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li> <li>*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li> </ul> </li> </ul> </li> <li>■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li> <li>**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li> </ul> </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li> <li>■ ①소득구분</li> </ul> <table border="1" data-bbox="309 1018 2132 1503"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20%;">소득구분</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5단계</td>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인 가구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인 가구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4.2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b>청약통장 자격요건</b>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1순위</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당첨자 선정방법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④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p><b>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b></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b>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b>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p><b>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b></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b>*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b></p>												
<p><b>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b></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b>②무주택자 우선공급</b>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b>③청약통장 가입기간</b>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b>■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b>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장소 및 방법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6.04.29.(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홈</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모바일: 청약홈 앱</li> <li>• 건본주택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송4로 16, 2층)</li> </ul>
일반공급	1순위	2026.04.30.(목)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홈</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모바일: 청약홈 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2순위	2026.05.04.(월)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절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b>본인 신청 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b>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b>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b>인감증명 방식</b>	<b>본인서명확인 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당첨자 선정 및 발표**

구분	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일시 : 2026년 5월 11일(월)</b></li> <li>• <b>확인방법</b></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일반공급	<p style="text-align: center;">1순위</p> <hr/> <p style="text-align: center;">2순위</p>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되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 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 받은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 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등이 적용됨)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계약체결일정 및 당첨자 서류 확인 일정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첨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b>(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b>이용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b>당첨자발표 서비스</b>	<b>청약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b>2026.05.11.(월) ~ 2026.05.20(수) (10일간)</b></li>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b>문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b>2026.05.11.(월) 08:00</b>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일정

<b>서류 제출 기간</b>	2026.05.12.(화) ~ 2026.05.17.(일), 10:00 ~ 17:00까지
<b>대상자</b>	특별공급, 일반공급(1, 2순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b>제출 장소</b>	기장 이진캐스빌 포레 건본주택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송4로 16, 2층)
<b>유의 사항</b>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계약체결 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유의 사항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확인되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예비입주 자 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		서약서		• 건본주택 비치 /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 제외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기존주택 처분 서약으로 청약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 6호서식)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용(용도: 당첨자 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는 '기장 이진캐스빌 포레' 공급계약을 필수 입력 후 발급분에 한해 계약 가능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시 제출 생략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인 경우 생략 가능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본인(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주택공급신청자)과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각서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사실증명서		• 전년도 소득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 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각서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아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 보유 확인 제출서류' 참고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피부양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3년이상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피부양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노부모부양	○	직계존속의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 피부양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자녀	• 주민등록표등본 상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	출입국사실증명원		•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만18세 이상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	생애최초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비사업자의 경우(건본주택 비치)
	○	사실증명서		• 전년도 소득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 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각서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li>※ 아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 보유 확인 제출서류' 참고</li> </ul>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ul>
	○	위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분양사무실 비치</li> </ul>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는 국내 거주 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li> </ul>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사진 등으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사진 등으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③ 해당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②, 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사진 등으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불가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원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사진 등으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국민연금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①, ② 세무서③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① 세무서/해당직장	
무직자	①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② 비사업자 확인 각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세무서 ② 견본주택	

※ 상기 소득증빙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 자격	소득납부 입증서류	발급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한 가지	① 세무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일 경우) ② 종합소득세 납부자가 아닌자 :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직인날인)	②, ③ 세무서/해당직장
---	--	---------------

※ 상기 소득세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중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청약자 본인의 연속적인 납부 실적이 아닌 통산 5년의 납부 실적을 의미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 보유 확인 제출서류**

해당 자격		소득납부 입증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① 부동산소유현황 및 등기사항증명서(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건축물 소유자) ③ 토지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확인서 ④ 부동산 종합증명서(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⑤ 재산세 과세내역(주택 외 건축물의 경우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울 경우)	① 등기소 ② 이택스(서울), 위택스(서울 외) ③, ⑤ 주민센터 ④ 일사편리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농지대장 ②축산업 허가증 ③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①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함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단위) : 재산세 없음을 증빙해야함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필수	① 등기소/인터넷등기소 ②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은전국단위 발급 안됨)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번호(13자리)가 확인되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공통서류(예비입주자 포함)		○	서약서	본인	• 가점제 당첨자에 한함(건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용(용도: 당첨자 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는 '기장 이진캐스빌 포레'를 필수 입력 후 발급분에 한해 계약 가능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시 제출 생략
	○		신분증		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을 받으려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li> <li>•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li> </ul>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li>•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ul>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주택공급신청자)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li> <li>-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li> <li>-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신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li> <li>※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li> <li>•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출입국사실증명</li> <li>•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li> </ul>
가점제당첨자		○	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 건분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li>•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는 경우</li> <li>-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li> </ul>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li> </ul>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Home) 청약홈 &gt; 청약자격확인 &gt; 청약통장 &gt; 순위확인서 발급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gt;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li> </ul>
		○	당첨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Home) 청약홈 &gt;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 조회</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이상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1년이상 부양)</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 변동사항(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li> <li>-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미혼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이상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li> <li>•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 서류 제출</li> <li>•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li> <li>• 소형·저가주택 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원 등)</li> <li>•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HUG 안심전세 포털에서 발급)</li> </ul>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허가임을 확인하는 해당 지자체 공문(민원회신) 등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 해당 기관의 당점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li> </ul>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ul>
	○		위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li> <li>• 분양사무실 비치</li> </ul>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는 국내 거주 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거주지역, 세대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점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일반공급 당점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점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점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점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를 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점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점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점이 취소된 자는 제58조 제3항에 의거 당점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 8 당점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비고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점자	2026.05.22.(금) ~ 2026.05.27.(수) 6일간 10:00 ~ 16:00까지	기장 이진캐스빌 포레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송4로 16, 2층)	051-724-3600
특별공급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유의 사항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를 준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 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장 이진캐스빌 포레 분양사무실(051-724-3600)으로 변경된 연락처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연락처 미통보에 따른 추첨일정 등 추가 안내사항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안내사항에 대해 안내받지 못할 경우 당사 및 사업주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반드시 청약 신청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자 및 미계약 세대에 대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주택형별 예비순번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자 및 미계약 세대에 대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주택형별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납부계좌	부산은행	101-2096-0461-05	이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 (예시 : 101동1101호 → 1011101홍길동)

■ 납부 시 유의 사항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상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증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는 ‘기장 이진캐스빌 포레 공급계약’을 필수입력 후 발급분에 한해 계약 가능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본인	• 「인지세법」제3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수입인지 구입처] ①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행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②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 인 신청 시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입주계획서	본인	• 당사 홈페이지 게재 및 견본주택 비치(6억 초과 주택에 한함)
		○	당첨 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 완료시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청약·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청약통장 부활신청이 가능하나, 최대 1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연대보증자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0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명'로서 과세대

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중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 연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특례 제외)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

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약무효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유 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 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 됩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앞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한 대출이자를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러자, 타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에 대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 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분양사무소)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3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ol> </li> </o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o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li> </ul>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li> <li>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li> <li>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li> <li>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li> <li>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li> </ol> </li> </ol> </li> </ol>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기타 유의사항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층·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30%)	잔금(70%)
		계약시	입주시
59	13,200,000	3,960,000	9,240,000
70	12,100,000	3,630,000	8,470,000

2)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부산은행	101-2096-0465-00	이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 (예시 : 101동1101호 → 10111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행사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서로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201홍길동)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서에 준합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계약주체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 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가구(위치, 형태 및 개수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변경, 조명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의 경우 단창이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 주방(식당), 침실, 드레스룸 등)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추락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1)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가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	제조사	품번(비고)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30%)	잔금(70%)
						계약 시	입주 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59, 70	LG전자	RNW0201C2SP / RNW0721C2SP	선택1) 거실+침실1	3,600,000	1,080,000	2,520,000
	59, 70	LG전자	RNW0201C2SP / RNW0721C2SP	선택2) 거실+침실1+침실2	4,970,000	1,491,000	3,479,000
	59, 70	LG전자	RNW0201C2SP / RNW0721C2SP	선택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00,000	1,860,000	4,340,000
전기인덕션(3구)	59, 70	LG전자	BEI2ANHLBIE	주방	1,390,000	417,000	973,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59, 70	LG전자	DUE5NSE	주방	1,080,000	324,000	756,000
욕실 스마트 환풍기	59, 70	힘펠	휴젠뜨3 FHD3-C150P	욕실1, 욕실2	980,000	294,000	686,000
현관 중문	59, 70	-	YS-016S	현관	670,000	201,000	469,000

## 2)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침실1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냉매매립 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 비용은 계약자부담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 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크기는 본공사 시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시스템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 침실1의 에어컨 냉매박스, 냉매 매립배관 및 에어컨용 전기콘센트 설치는 제외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계약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무선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조절장치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설치 부위의 천장 위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운전시 실외기실 외부 그릴이 항상 열려 있는지 확인 후 운전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의 문제 발생시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 그릴의 색상은 외관을 위해 평형별, 층수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천장형 냉매 배관이 설치되며,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기구 위치 및 기타 시공 여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빌트인 가전 미선택 시 기본 제공 품목 및 수납공간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안내 이미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스마트 환풍기 선택시 설치개소당 무선리모컨 1개가 제공 됩니다.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스마트 환풍기 선택시 기본제공 되는 환풍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스마트 환풍기 선택시 욕실 천장에 점검구 개소 및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추가 선택품목 제품은 여닫음시 상,하부 유격에 의한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추가 선택품목은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과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제반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제품사양 및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서비스 내용 및 제품에 대한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민원,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에는 기본 설계안대로 시공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에 따라 인접하는 가구, 마감재, 벽체, 몰딩, 걸레받이, 커튼박스, 등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설치 위치와 수량, 형태가 홈페이지 및 홍보물, 견본주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전기·통신 단자함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사양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없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3)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금 및 공급 금액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b>부산은행</b>	<b>101-2096-0471-07</b>	<b>이진종합건설 주식회사</b>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 (예시 : 101동1101호 → 10111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행사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서로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201홍길동)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에 준합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 (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계약주체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 일반 공통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아파트 명칭은 '기장 이진캐슬빌 포레'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펠네임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동·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탑상형 구조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단지 배치상 동일 형별(평형) 아파트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와 관련된 분양 홍보물상 조감도 및 견본주택의 모형도 등의 아파트 입면은 실시공시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 및 관계 인허가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용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공사도중) 전 세대내 무단출입 및 세대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 발생 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 내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은 별도의 분양 및 운영시설로서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은 불가합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유수지, 주차장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 등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존치건물 및 존치시설 등으로 인해 소음, 먼지, 분진, 조망권, 세대간섭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 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부지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레벨 조정 등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본공사 시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홍보물 등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본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면에 명기되는 면적, 치수 등은 실제 시공 과정에서 일부 경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층간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사업 부지면적 등은 법령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대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되, 위치의 지정이나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세대별 면적분할이나 위치지정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경계 및 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주지연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

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에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에 대한 금원 확보와 금액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비주거부문의 시설은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가 아닌 별도의 분양 또는 운영 시설로 분양자, 임차인 또는 운영자의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인접지역의 개발 및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부대복리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이어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한 세대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부산지방경찰청 및 부산시 교통관련부서와의 협의로 인한 교통시설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준공 전에 입주예정자 개인 또는 임의 단체(입주예정자모임, 카페 등)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마감재 및 창호류(방화문 포함)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설치한 경우, 준공 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증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 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예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등의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미분양 세대는 사용승인 이후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유동화, 임대, 기관 등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지 주변현황)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과 대지경계에 접한 주변 건물과의 이격거리를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해 입주 후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 되어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에 볼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웬스, 각종 게시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로수 및 단지 내 식재로 인한 조망 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인허가)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인허가 조건이행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축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시 인허가청 협의 사항 및 인가조건 사항들을 이행함에 있어 설계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

-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초등학생은 기장초등학교, 중학생은 17학교군[기장중학교, 대청중학교, 장안중학교]에 학생배치 가능합니다.
-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여부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배치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진계획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등 시공에 관련된 유의사항

(단지·외관설계)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및 색상,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등의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의 디자인, 색상,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안전난간 설치 여부등은 안전, 외부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 성능, 상품개선,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명칭, 동표시, 로그 위치, 건물 외관 및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등은 해당관청과 협의(자문) 과정에 따라 결정되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제시된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의 정정, 주택법 시행규칙 제 13조 5항에 해당하는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경미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및 공용시설물 설치,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T.L, 상가, 부대시설, 조경 식재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조경 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조경 수목 유지관리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외창부 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으며 오염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는 공사감리자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 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각동 저층 세대(일부세대)는 서쪽방향 옹벽(구조적 안전성)으로 인하여 산이 아닌 콘크리트가 보일 수도 있어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으로 계약체결 전에 필히 관련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인지하고 수인해야 합니다.
- 사업부지가 산비탈에 위치하여 벌레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외의 나머지 부지(도로, 녹지 등)는 각각의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지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므로,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물과 도로의 선형, 포장계획, 식재 수종은 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에 의해 각 동별 출입구 레벨이 상이함을 인지하시어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 101동은 8M도로와 인접하여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전 해당 세대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최상층 세대는 59타입은 14층과 19층이며 70타입은 15층과 19층 입니다.
- 102동 최상층 세대는 59타입은 14층과 20층이며 70타입은 20층 입니다.
- 101동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인접하니 계약체결 전에 필히 관련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인지하고 수인합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단지 내 보행통로 내) 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지하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지하펌프실, 전기실 등의 부속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 101동은 지하주차장 램프 차량 진출입에 따른 경고음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전등 비상상황, 주기적 유지관리 또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필요에 의해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될 시 D/A를 통해 매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주택전시관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 출입구 동선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저층부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하고 있어 해당 동의 저층세대는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배지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입주하는 상가 종류에 따라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외벽에 환기 장치 및 세대 화장실 직배기 관련 외부마감캡 설치가 되며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옥상 난간대의 디테일, 적용 구간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상부에는 옥외 안테나(이동통신중계장치, 무선통신보조설비등)가 설치될 수 있어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일부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인-허가과정,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 단지내 주동배치 계획에 따른 일부 세대 영구 음영이 존재 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 외부에는 경관개선을 위한 돌출 장식구조물이 설치되어 빗물 등의 부딪힘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인근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소음 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 필로티 하부 휴게시설, 공용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소음 및 생활권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

- 본 아파트는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로 설계 시공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아파트의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

- 수직 동선은 각동 계단, EV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배기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입력조정설비(지역정압기 포함)를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가스시설에 대한 부지제공, 도시가스 인입위치 및 정압시설 위치 및 규격 등은 도시가스공급업체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는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단지 내의 급수계량기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도사업소 등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내부보양 후 공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방후드의 설치로 인해 운전소음이 실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민 커뮤니티시설과 지하에 설치되는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펌프실, 우수저류조, 등의 시설로 인해 수직적으로 인접한 각동 저층 세대는 그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난방은 도시가스 개별난방으로 공급됩니다.
- 환기를 위한 급·배기 루버가 각 세대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상부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환기장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기·통신)

- 아파트 옥상에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현장의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시공 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덕트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는 관련규정에 의거 침실벽 등의 노출된 부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에 설치됩니다.
- 일부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옥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지상 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차량의 불빛이나 소음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총 3개소(급속:1대, 완속2대)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 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램프진출입 경고음 및 진출입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경관 조명 및 기타 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사용분에 대하여 공동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 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 단자함 · 세대 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방송 시설물로 인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방)

- 향후 소방법 준수를 위한 소방설비 및 제연 시설물의 위치 및 개수 등의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대피공간 완강기 설치는 소방법에 의거하여 해당층에 설치 예정입니다.
- 세대내부 대피공간의 대피창은 대피시에만 개방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환기 등의 목적으로 개방을 금지합니다.

(주차장)

- 주차가능대수는 총 152대입니다.(일반 149대, 전기 3대)
-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 바라며, 주차대수 및 주차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 진출입, 진출구 램프가 설치되는 근처 저층부 세대의 차량조명,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차로 높이 이상의 차고의 택배차량 및 화물탑차등은 진입 및 주차가 불가합니다.
- 주차장 진출입구는 1개소입니다.
- 지하2층 주차장 엘리베이터는 지하1층 주차장과 지상1층으로만 운행되므로 지하2층 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진출입 하기 위해서는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환승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설계)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욕실 출입 시 문턱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바람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벽체는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2호라인, 3호라인 세대 침실1의 벽체는 확장할 수 있는 가변형 벽체입니다. 이에 따라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되며 마감재에 따라서 높이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천장 내부, 복도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 및 복도에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빌트인가전,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문 개폐시 개별 욕실화등과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창 미개방 가동시 냉방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릴창 근처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타입 선택 시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흠통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내부 구조(경량벽 포함)를 임의로 변경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인지하시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트월, 인조대리석, 타일등의 마감재는 나누기가 발생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상판 및 벽체 마감재의 이음매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과 바닥의 마감재는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천장 및 점검구의 재질, 규격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택형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위치 방향, 마감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공사여건 및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 수납치수, 디테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각 실의 벽체두께, 수납장등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 두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시 반드시 실측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천정, 벽, 바닥 등의 내부 마감은 시공성 개선에 따라 실시공 시 마감 상세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되었으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사용하는 제품에 따라 수전 및 배수구 사용 시 규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창호)

- 세대 내·외부 창호 및 문은 실시공시 풍압·풍동 시험 및 최적화 설계, 사용성 향상, 개방성 확보, 디자인, 자재 수급등을 고려하여 형태, 색상, 유리두께 및 창호사이즈, 설치위치, 개폐 방향, 디자인 등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마감재)

- 천연자재(무늬목, 천연석재 등) 및 석재타일은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자재의 특성상 패턴 불균일, 색상등의 차이는 하자사항이 아니며 개인취향에 따른 교체시공이 불가합니다.
- 일반/주방가구 마감인 지정 PET, LPM등은 사용시 스크래치, 찍힘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타입의 평면이라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액세서리 및 콘센트)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되며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위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설비,전기,통신)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 적용으로 세대 발코니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며, 보일러 가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은 수납 목적이 아닌 후드 장비 및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벽체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발코니에는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발코니에 일부 가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환기를 위하여 다용도실(발코니)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수량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 장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화장실 천장에는 환기팬이 설치되며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위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 크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콘센트는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되며, 고용량 가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방 다용도실(발코니)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안쪽(천장, 벽체)에는 전기, 통신, 소방 시설물을 위한 금속가요전선관, 케이블 및 기타 부속품들이 노출시공 될 예정입니다.

(기타-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 본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에 건립되는(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주택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주민 커뮤니티시설(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공간구획 및 구성은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 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실 외부 마감은 인허가조건 이행 및 현장여건 등에 의해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절차

- 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합니다.
- “수분양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담보책임의 종료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 내에 보수요청을 하지 않거나, “시공사” 등이 보수요청에 따라 보수를 완료한 경우, 위 연차별 하자보수 책임 및 하자보수보증 책임은 이행된 것으로 보며, “수분양자”는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이에 반하여 “분양자”, “시공사” 등 에게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수분양자”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 입주, 관리 관련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하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샷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동PIT 일부 공간에 관련 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됩니다.
- 사업주체가 입주 시 선정할 주택관리업체는 주거와 비주거의 통합운영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하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구성원 결정에 따라 용도별 별도 관리업체에 인수인계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입주지정기간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지정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기 인테리어공사(배관, 배선, 자재변경)로 인해 홈네트워크시스템 연동이 안될시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해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축허가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은 입주민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른 가구·설비와의 간섭,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시공사는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CS 사무실을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PIT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전시품목, 홍보물 관련

-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견본세대 CG는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전주택형 발코니 확장형이 적용되어 표현하였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청약 및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내 설치되는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위치, 수량, 타입은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주택전시관은 승인된 건축허가 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계약 전 단지 여건(기반시설 위치,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세대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에 따라 마감자재는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 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세대 입구 디자인은 주택전시관 용으로, 본 공사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세대내 마감 코킹(실리콘)은 주택전시관과 동일부위, 유사색상으로 시공 예정입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내 다용도실, 대피공간의 도어 위치는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분양홍보물,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 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과정이나 공사여건 등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주택전시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등급,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홍보자료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인·허가 조건이행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주택전시관,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주택전시관을 우선으로 함)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내 설치되는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수량, 타입은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세대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 공사시 시업체,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도서(단위세대 전등, 전열 배선도)의 단위세대 배선기기(스위치, outlet 등), 조명,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주택전시관에 따르며, 본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견본세대 안내 영상홍보물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표현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고정방법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별 용도 및 면적,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형태나 주동 입면의 패턴, 색채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비상조명, 시각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과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PVC창호,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건립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녹지, 공원, 산책로, 학교 등)과 도시기반시설(교통시설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정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주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도로계획 및 시설 등은 개발 예정인 사항을 포함한 사항들은 완공 예정 연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당 사업지의 입주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대지경계선 외의 구간은 시공사의 시공분이 아니며, 대지경계선범위를 벗어난 구간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거실 실링팬,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환기 유닛,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식재,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 아이소, 모형, 주택전시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형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종 기반시설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조감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식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옵션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분양홍보물은 사전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예정사항은 개발계획의 변경,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자료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바라며, 계약체결 전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가마,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각종 시설물,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분양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 모형(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 단지구획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당사와는 무관하며, 해당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의 사업으로 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70타입 주택형의 확장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홈페이지 또는 주택전시관에서 제공하는 분양홍보물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전에 주택형별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비확장 부분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건물의 외관 디자인(저층부 석재범위, 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아파트 계단창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위치는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위치나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청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변경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청약홈 및 분양 홈페이지(www.기장이진캐스빌포레.kr)에 변경내용을 포함한 정정공고를 공지 할 예정이오니, 신청자들은 청약신청 시 변경 및 수정사항을 숙지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12**      **보증관련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2312026-101-0000400호	삼백팔십억이천사백이십팔만오천원정(₩38,024,285,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타내용**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13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단, 사전방문 일정을 통보한 이후라도 공사여건상 자재, 장비 및 인력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방문 시작일을 15일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3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실제 입주자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날을 각각 통보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45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구분	내진능력
메르칼리 등급	Ⅷ (최대지반가속도: 0.2016g, 주차장 0.168g)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지하2층	2.3M(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4M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의무사항	적용여부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제2항 적용)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건축감리	전기·통신·소방감리
회사명	㈜이든엔지니어링	대원포비스(주)
감리금액	646,160,000	56,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이진종합건설 주식회사	동수토건 주식회사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405, 5층(수영동,수용빌딩)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405, 4층(수영동,수용빌딩)
법인등록번호	180111-0060094	180111-0649088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송4로 16, 2층

■ 분양문의 : 051-724-36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기장이진캐스빌포레.kr](http://www.기장이진캐스빌포레.kr)

※ 본 주택전시관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 및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